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	규정번호	3-4-10
		제정일자	2008.03.01.
		개정일자	2026.09.01.
		개정차수	13차
		소관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과정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학칙 제4조에 의한다.

② 전공심화과정의 설치학과 및 모집인원 등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의한다.

제3조(수업연한) 전공심화과정은 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한다.

제4조(입학자격)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 전문학사과정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관리의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입학허가) 전공심화과정의 입학허가는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7조(교육과정)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정기준은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서 모집 단위별 전공심화과정의 특성에 따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과이수 단위) 전공심화과정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 실험, 실습, 실기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 학점은 1년과정 20학점, 2년과정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9조(학점인정)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이수 인정 학점은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 1년 과정 120학점, 수업연한 2년 과정 80학점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 입학홍보협력처장, 설치학과교수, 산업체위원, 외부위원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위원은 50%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신설 2023.05.01.>

제11조(위원회 기능)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학생 선발
2. 전공심화과정 운영 및 관리
3.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학칙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